



제427회국회(임시회)
제3차환경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요건 명확화 〉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546호)

2025. 7.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요건 명확화(안 제6조)	3

I. 제안경위

2025년 1월 15일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양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정부, 노동조합, 기업, 시민단체와 같은 비정부기구(NGO)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사회적 갈등요소를 협력요소로 변환하는 정책 관리체제가 활용되고 있음.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심의와 결정을 하는 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의 참여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러나, 각종 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노동계’, ‘근로자 대표’,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일관된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각 위원회가 특정 노동단체의 대표성을 인정하거나 배제할 경우,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 선정 과정에서 법률 해석의 모호성으로 인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노동계를 대표하는 참여자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함으로써, 노동계 참여자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법적 해석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정책심의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

Ⅲ. 검토의견

1.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요건 명확화(안 제6조)

가.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추천권자를 각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서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 ② (생략)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근로자위원은 <u>노동조합</u> 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u>사용자단체</u> 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③ -----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u> 가----- ----- <u>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u>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u>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u> 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④ ----- -----,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u>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u>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u>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⑥·⑦ (생략)	⑤ -----<u>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u>----- ----- ----- -----. ⑥·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노동위원회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공익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하되,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함.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위원의 추천절차 및 선정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는바,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과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 추천권자

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고, 지방노동위원회는 관할구역 내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와 관할구역 내 조직된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하되, 미가맹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노동위원회법령상 위원 추천 자격 >

구분		법률	시행령
근로자· 공익위원	중노위	노동 조합	■(본문) 총연합단체, (단서) 미가맹노조도 가능
	지노위		■(본문) 관할구역 내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 (단서) 미가맹노조도 가능
사용자· 공익위원	중노위	사용자 단체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지노위		■관할구역 내 조직된 사용자단체

노동위원회 구성 관련 법 조문

「노동위원회법」 제6조(노동위원회의 구성 등) ③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④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사람을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촉한다.

1.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
2.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절차나 추천된 공익위원을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5조(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위촉대상자의 추천절차) ① 근로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중앙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용자위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자단체가 추천한다.

1.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제6조(공익위원 위촉대상자의 선정) ① 노동위원회 위원장,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심판담당 공익위원, 차별시정담당 공익위원 및 조정담당 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추천하되, 위촉될 공익위원 수의 범위에서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위촉될 공익위원 수만큼 추천하여야 한다.

② 공익위원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추천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아니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으로부터 직접 추천을 받을 수 있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2. 지방노동위원회의 관할구역에 조직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지역대표기구 및 사용자단체: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③ 제2항에 따라 공익위원을 추천하는 노동조합이 복수인 경우 해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를 고려하여 각 노동조합이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에 관한 분쟁 발생 시 판정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현행법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에게 각각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사람을 균형 있게 위원으로 배치함으로써 공정한 판정 및 조정 결과를 도

출하려는 것임.

개정안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는 산업별 연합단체(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으로 구성)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¹⁾²⁾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개별 노동조합에 비해 다양한 산업과 직역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입법적 의의가 있음.

다만, 현행법은 법률에 위원 추천 자격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되, 시행령에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의 추천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과 같이 ‘전국적 규모’를 명시하여 한정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추천권한이 ‘총연합단체’에 한정되는바, 총연합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미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이 전체 노동조합원의 17.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 시행령이 미가맹 노동조합도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노동조합의 근로자대표 추천권한을 법률에서 원천적으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설립의 신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동종산업의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산업별 연합단체와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전국규모의 산업별 단위노동조합을 구성원으로 하는 총연합단체를 말한다.

2) 현재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①한국노동조합총연맹, ②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③전국노동조합총연맹, ④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⑤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⑥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등 6개임.

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음.

< 2023년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 비교 >

구 분	인원수	비율
한국노동조합총연맹	1,160,162명	4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086,618명	39.7%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7,821명	0.3%
전국노동조합총연맹	1,441명	0.1%
국민통합노동조합총연맹	1,068명	0.0%
대한민국노동조합총연맹	511명	0.0%
미가맹	479,758명	17.5%
합 계	2,737,379명	100%

자료 : 고용노동부, 『2023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 2024.12.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위원회 위원 추천 시 지역별 업종·특성 및 지역 내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워질 수 있고, 현행법이 ‘노동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노동단체’로 변경할 경우 대표성 등이 보장되지 않은 다수의 노동단체가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성 및 공정성·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현행법 시행령에 미가맹 노동조합의 추천권을 규정하여 다양한 단체가 노동위원회 위원 추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바 노사분쟁 해결기구로서 노동위원회에 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들이 반영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35